2024-24호

공 고 문

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[2023.05.01.~2024.04.30.(1년)]의 도과 및 동기간 1개월 전 촉구 공문에도 아직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아 해당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24.04.30.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(기간 초과 시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)

------다 음------

1. 대상자

연번	이름	주소	생년월일	비고
1	정**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39번길 21	06.04.04.	
2	한**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270-19 102동 603호(서둔동,서수원울트라참누리파크)	06.04.10.	
3	구**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36번길 32-6,B02호(서원맨션)	06.04.10.	
4	김**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50번길 25-6 나동 301호(탑동,태영아이원)	06.04.12.	
5	유**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서로7번길 2	06.04.14.	
6	박**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121 101동 806호(서둔동,희성연인아파트)	06.04.27.	

2. 발급기간 : 2023.05.01.~2024.04.30.

3. 공고기간 : 2024.04.02.~2024.04.15.

4. 지참서류

가. **학생증**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)

나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(3.5cm×4.5cm)

※ 접수할 수 없는 사진

- 모자를 쓰거나 눈을 감은 사진
- 현상·인화된 사진외의 변형이 가능한 기타사진(이미지,스티커,복사사진등)

다.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문의 : 031-228-6766 이소영

2024년 04월 02일

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장